

V.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개선논의

1. 신용카드 규제²⁸⁾

- 신용카드시장 체계의 개선을 위해 여전법 제19조와 제70조에 명시한 신용카드 수납 및 수수료 전가 금지 항목과 처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.
- 신용카드 수납 의무화를 명시한 여전법 제19조 제1항은 지급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있어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
 - 거래당사자 중 하나인 가맹점의 지급수단 선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상품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
 - 신용카드 수납의 의무화를 완화할 경우 조세의 투명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의 의무화 등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음.
-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전가를 금지한 여전법 제19조 제3항의 폐지를 통해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
 -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높을 경우 수수료 일부가 상품가격의 인상을 통해 이용자에게 간접적으로 전가 가능하고 이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킴.
 -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세 및 관세 납부 시 납세자가 신용카드

28) 김재진 (2008),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(2008), 정찬우(2008), 최형선 (2010) 등을 참고

수수료를 부담

- 김재진(2008)은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, 국가재정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²⁹⁾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
-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법 제19조와 제70조의 폐지는 성급한 제도개선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훼손 및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
- 정찬우(2008)는 동 조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완전폐지보다는 소액결제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 의무 완화, 현금이용자에 대한 가격차별화 허용 등을 통해 순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

2. 가맹점수수료

-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여전법에 따라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할 수 없고 신용카드 이용자가 증가함으로써 업종별 가맹점수수료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
-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업종별로 차등화 되어 있어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의 업종별 수수료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이견이 존재
-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자를 배경으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협상력이 낮은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³⁰⁾
- 소득공제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

29) 미국과 영국에서도 신용카드 납부대행 서비스가 시행중이며 미국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.

30)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(2008), 정찬우(2008), 윤성훈·이경아(2009)

약화를 가중

- 신용카드 이용자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사 간의 과당경쟁이 일어날 경우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가맹점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음.
 - 신용카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맹점 탈퇴는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 탈퇴가 쉽지 않음.
- 가맹점수수료가 상품가격에 일부 반영될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카드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
- 일부에서는 여전법 제3조 제1항, 제3항 등이 신용카드사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지 못한다고 지적³¹⁾
- 만약 신용카드 가맹점 탈퇴가 쉽지 않은 시장구조일 경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유인이 더욱 줄어들.
-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업종별 가맹점수수료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고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
-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도 신용카드 이용자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제혜택을 적용받음.
-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액 일정부분이 소득세 공제대상
-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00분의 132)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고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임.
-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은 2007년부터 영세가맹점 및 재래시장 가맹점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유도

31) 윤성훈·이경아(2009)

32) 음식점점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00분의 2

- 2010년 4월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됨.
 - 재래시장내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간 매출이 9,600만원 미만인 가맹점³³⁾에 대해서 1.6~1.8%로 인하
 - 재래시장 가맹점 이외에 연간 매출이 9,600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2.0~2.15%로 인하

<표 9>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사례

시기	구분	변경전	변경후
2007년 8월	신용카드 영세가맹점	2.0~4.5%	2.0~2.2%
	신용카드 일반가맹점	1.5~4.5%	1.5~3.6%
	체크카드	1.5~4.5%	1.5~2.3%
2008년 10월	신용카드 중소가맹점	평균 2.74%	평균 2.57%
2009년 2월	신용카드 재래시장	2.0~3.6%	2.0~2.2%
2010년 4월	신용카드 재래시장	2.0~2.2%	1.6~1.8%
	신용카드 중소가맹점	평균 2.57%	2.0~2.15%

자료 : 금융위·금감원 보도자료, 한국은행(2010)

3. 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

가. 가맹점수수료 인하

- 보험회사는 평균 3.00%(2.60~3.24%)인 가맹점수수료가 백화점 등 타 업종에 비해 높아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
 - 건당 150원인 계좌이체(자동이체) 수수료에 비해서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
 -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보험료 수납이 이루어지는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및 장기보험상품에 국세 및 관세 수준의 수수료인

33) 금융위원회는 재래시장 가맹점 및 연간 매출규모가 9,600만원 미만인 가맹점 현황은 관계 기관 협조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라고 발표

1.20%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³⁴⁾³⁵⁾

- 신용카드사는 현재 보험회사의 가맹점수수료는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
 - 가맹점수수료는 최초 가입 시 설정된 것이 적용되지만 이후 결제 금액에 연동하는 슬라이딩 방식이 적용되어 현재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실질 수수료는 백화점 등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주장³⁶⁾

나. 장기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대상 제외

-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제외대상 포함여부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을 당시 활발하게 논의됨.
 -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 금융상품을 ①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과 ②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·적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등으로 정의
- 보험회사는 장기보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금지대상 금융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
 -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종신보험, 건강보험, 연금보험 등의 장기보험상품에서 저축(적립)보험료의 비중이 위험보험료보다 높아³⁷⁾ 은행의 예·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주장

34) 관련법률: 국세기본법 제46조 2호(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)

35) <http://www.cardrotax.or.kr/index.giro>

36) 박인철(2010)

37)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FY08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구성비는 위험보험료 20.1%, 저축보험료 57.9%이며 사망보험(종신, 건강 등)의 구성비는 위험보험료 19.7%, 저축보험료 50.6%임.

- 그러나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수납이 허용된 보험상품을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보험료 결제 시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
- 금융위원회는 가맹점계약은 사적 자치계약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보험상품을 포함하지 않음.
 -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와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 시 신용카드 수납 대상 보험상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
- 최근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결제 대상 상품과 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.
 - 보험회사는 신용카드 결제 대상 상품으로 정기보험과 어린이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상품만 포함시키고 종신보험, 연금보험 등은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.
 - 또한 장기보험상품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국세 및 관세 수준인 1.2%까지 인하하는 것을 요구
 - 협상의 결과에 따라 가맹점 탈퇴도 고려하고 있음.
 -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일부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제외는 소비자의 편의를 저해하며 현재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
- 현재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에 한해서만 신용카드를 수납하기로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.
 - 가맹점수수료와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의 신용카드 결제 대상 상품과 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상은 진행 중